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19 - 098

(www.jbe.go.kr)

# 2019년

#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http://www.jbe.go.kr/과별홈페이지/인성건강과/업무마당/건강교육/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에 탑재되어 있습니다.](http://www.jbe.go.kr/과별홈페이지/인성건강과/업무마당/건강교육/학교환경_및_위생관리에_탑재되어_있습니다)



# 전북교육 기본 방향

## ■ 교육비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sup>+</sup>

## ■ 교육지표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



# 전북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

## 목 표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유지

-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및 교사(校舎)내 공기질 개선
- ▶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관리 철저



### 교사 내 환경 위생관리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 학교 교사(校舎)내 공기질 유지·관리 강화
- 학교내 소음 방지관리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 학교 내·외 교육환경관리

-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비

# … 목 차 …

<b>I. 학교 환경위생 관리</b> .....	1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	3
2. 학교 교사(校舎)내 공기질 유지·관리 강화 .....	13
3. 학교내 소음방지 관리 .....	18
4.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	20
<b>II.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b> .....	21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23
2.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32
3.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	37
<b>III. 행정 사항 요약</b> .....	41
1. 제출 목록 .....	43
2. 제출 서식 .....	44
<b>□ 참고 자료</b> .....	63
1. 2019년도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	65
2. 지하수 정밀수질검사 46항목 .....	69
3.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 표지판 .....	70
4. 학교내 정수기의 위생관리 방안 .....	71
5.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카드 .....	72
6.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	74
7.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75
8. 고발요령 및 절차 .....	76
9.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회수 .....	78
10.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일상점검 사항 .....	79



# I. 학교 환경위생 관리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2. 학교 교사(校舎)내 공기질 유지·관리 강화
3. 학교내 소음방지 관리
4.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 1.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 □ 기본방침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에 기여

## □ 관련 법령(지침)

-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의 수질 관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
-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수질검사기관】,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등】, 제22조의5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교육부 지침 【교사(校舎)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 현 황

-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분석
  - 지하수는 지표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사 시기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학교 유동적임
  - 학교에 정수기 설치제한 방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
    - ※ 정수기 사용학교 현황: '15년(745교) ⇨ '16년(758교) ⇨ '17년(772교) ⇨ '18년(779교)
  - 이에 따른 정수기의 관리 및 수질검사에 따른 문제 상존
  -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기 위하여 검사를 일임하는 사례 및 수질검사 직전 청소 또는 소독 등 문제점 발생
    - ※ '12년 감사원의 학교보건업무 감사 시 일선학교의 수질검사 부실관리 등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5]에서 ‘먹는 물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가능성 상존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토록 규정(설치 곤란한 경우 대책 강구)
-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 시 체류시간이 길어질 경우 잔류염소의 감소로 미생물 오염 가능성 증대
- 정수기와 냉·온수기(필터형)는 수질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음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2년 주기) 및 저수조 수질검사(1년 주기)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적기 검사 미흡

○ 2018. 12월 현재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음용하는 학교 14교(1.8%)

**< 각급학교 급수시설 현황 >**

2018.12월 현재

구 분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20	423	209	133	10	795
급수 시설 (%)	상수도	20 (100)	416 (98.3)	206 (98.6)	129 (97.0)	10 (100)	781 (98.2)
	지하수	0 (0)	7 (1.7)	3 (1.4)	4 (3.0)	0 (0)	14 (1.8)

\* 학교 수에 분교 포함

- 상수도 인입으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상수도 인입 현황: '16년(21교, 2.6%) ⇨ '17년(15교, 1.9%) ⇨ '18년(14교, 1.8%)

**□ 추진방향**

○ 먹는 물의 공급 원칙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

○ 수돗물 관리대책

가. 수돗물 수질검사

1) 저수조 수질검사

가) 검사대상: 건축연면적 5천㎡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 중 저수조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

나) 수질검사 횟수 및 항목

- 검사횟수: 연 1회 이상
- 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6개 항목)

다) 수질검사 유의사항

- 채수방법: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에서 채수
- ※ 참고사항: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수질검사 제외(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검사대상 포함)

라) 검사결과 조치사항

-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조치
- 부적합 판정 시 저수조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재검사 실시
- 부적합 판정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속적인 부적합 판정 시 직결수 연결 방안 마련

2) 옥내급수관 일반검사

가) 검사대상: 수돗물 사용 모든 학교(의무: 건축 연면적 5천㎡ 이상인 학교)

나) 수질검사 횟수 및 항목

- 검사횟수: 준공검사(급수관을 갱생·교체 등 조치한 경우)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1회 이상
- 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동, 아연(7개 항목)

다) 수질검사 유의사항

- 채수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1개소 이상에서 최소 6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

라) 검사결과 조치사항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 시 **급수관 세척 실시**(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이면 **반드시 갱생하거나 교체**)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검사항목 중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 시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급수관을 갱생(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
  - \* 세척: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 또는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과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
  - \* 갱생: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
  - \* 참고사항 : 기타 관련 사항은 「수도법」 등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2013.12.09.):** 건축연면적 5천㎡ 미만인 학교의 경우도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 조치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적극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위 수질검사 등 조치사항은 「수도법」에 따라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검사 실시
  -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 실시현황 점검 예정

나. 수돗물 관리사항

- 1) 교사 신축 및 상수도 인입 학교는 수돗물을 직결 급수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통한 노후수도관 교체 등으로 안정적, 위생적인 수돗물 이용 방안 강구
- 2) 직결급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 가) 시설관리개선 :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 시간을 최대한 단축
  - 나) 운영관리개선
    - 저수조의 청소주기(반기 1회), 점검주기(월 1회) 준수, 점검일지 작성·보관, 관리자 지정 등 책임관리제 수립·시행
    - 저수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실시
    -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청소 대상에서 제외(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청소 대상 포함)
- 3) 먹는 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도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에 대한 설치비 지원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4) 노후된 급수시설로 인하여 오염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낡은 수도관 및 급수설비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
- 5)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서 상수도요금 절감 등의 사유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

○ 지하수 관리대책

가. 지하수 수질검사

- 1) 검사대상: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분교 포함)
- 2) 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

구 분	주기/검사료	수질검사 항목	
		일부 항목(3회/년)-간이검사	전 항목(1회/년)-정밀검사
음용수	분기 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6개 항목 (1, 3, 4분기 검사)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46개 항목(2분기 검사) 【참고자료 2】
	검사료	30,200원	267,700원
생활용수	3년마다 1회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4 참조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은 제외	
	검사료	137,800원	

3) 수질검사 유의사항

- 가) 정수시스템시설 설치학교는 지하수(원수)가 아닌 정수 처리된 물을 검사
- 나) 정수 또는 소독이후 전 항목 및 일부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항목에 따른 조치 강구(타 관정 개발, 초과항목에 따른 정수장치 도입 등)
- 다) 2개 이상의 지하수를 각각의 저수조(물탱크)를 통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각각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실시
- 라) 지하수를 화장실 또는 청소용으로만 사용하는 학교는 반드시 먹을 수 없는 물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부착(생활용수 지하수 3년마다 수질검사 실시)

4) 검사결과 조치사항

- 가) 전 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
- 나) 수질검사(1차)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즉시 먹는 물 공급을 중지
  - 부적합 항목에 따라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후 재검사 실시
  -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후 음용수로 사용
- 다) 재검사(2차) 결과 “부적합”으로 최종 판정된 급수시설
  - 폐쇄조치 또는 청소용으로만 사용
  - “음용불가” 표시 안내문을 부착하여 절대로 음용하지 못하게 할 것
  - 상수도(마을상수도) 인입 및 급수원 재개발, 정수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
- 라) 수질검사(정수기 포함) 결과를 공개(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나. 지하수 관리사항

- 1)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근지역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의 학교 내 인입을 적극 추진
  - ※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의 변화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
- 2)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끊어서 공급**
- 3)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급식시설 및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매분기 브롬산염\*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 최소 및 부적합 요소 제거
  - \*브롬산염(Brom酸鹽): 인체 발암 가능성 화학 물질(무색의 결정으로 강력한 산화제)
- 4) 상수도와 지하수를 병행 사용하는 학교는 반드시 상수도를 먹는 물로 사용
- 5) 노후 급수관 교체 및 파손된 급수전, 급수대는 즉각 보수 조치
- 6) 급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독, 시설수리, 오염원 제거 등 지속적인 급수위생관리 실시

- 7) 급수시설 주변의 오염원이 없도록 유의하고, 신규 설치 및 개·보수시에는 오염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유의
- 8) 지역 상수도의 교내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 암반층에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
- 9)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원수에서 적용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경우 정수장치 관리 철저 등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 10) 지하수를 먹는 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반드시 경유

## ○ 정수기 등 관리대책

### 가. 학교에 정수기 설치 제한(기본 방침)

- 1) 각급 학교에서 정수기는 불안정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 2) 교과교실제 사업 및 각종 현대화사업비 집행 시 사용 인원 및 적정 용량의 검토 없는 정수기 구입 제한
- 3) 정수기의 위생상 문제, 수질검사 실시 등 관리업무로 인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

### 나. 정수기 수질검사

- 1) 검사대상: 학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정수기  
 다만,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2) 수질검사 횟수 및 항목
  - 가) 정수기 수질검사 의무화: 분기 1회
  - 나) 조사항목: 환경부가 제시한 2개 항목(총대장균군, 탁도)
  - 다) 수질검사 수수료: 9,200원
    -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할 경우 정수기 수질검사 시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여 수질검사 실시
- 3) 수질검사 유의사항

가)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시료변경, 수질검사 직전 염소계 약품 투입 등 금지(염소검출 시 수질분석기관은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 통보)

나) 수질검사는 청소 또는 소독 이후 최소 7일 이상 경과 후 실시

※ 채수 시 정수기 관리카드에 기록을 확인한 후 최근 7일 이내 방문기록이 있을 경우 채수일자 변경조치

#### 4) 검사결과 조치사항

가) 1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즉시 음용불가 표시 안내 및 음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정수기 청소 및 필터교체 등 자체 조치하여 재검 실시 결과 적합 판정 시 음용

나) 수질검사 재검 결과 부적합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 조치**(최종 부적합 또는 직전 4회 검사 결과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된 경우)

※ 1차 재검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 즉시 철거 후 결과 제출 【서식 3】

다)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가 검출된 정수기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수기에서 정상적으로 채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다. 정수기 관리사항

- 1) 정수기 필터에 농축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1~2ℓ정도 통과시킨 후 사용
- 2) 정기적인 필터교환 및 청소·소독을 실시하며, 업체 위탁 시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기록·확인 할 것 【참고자료 5】
- 3) 정수기 꼭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공동 컵 사용 금지
- 4) 냉·온수기에 꽂아 사용하는 먹는 샘물의 경우 샘물 교체 시 유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정기적으로 냉·온수기를 깨끗이 세척
- 5)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난방기 앞 등 설치 금지
- 6)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 실시(이 경우 소독에 의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7) 정수기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현황 기록을 유지

- 8) 냉·온수기의 에어필터는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9) 온수제조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정수 기능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고려
  - 특히, 저수조 및 배관 청소상태 등 주기적 확인 및 온도 조절기, 제품의 각 기능상태 및 램프 작동상태 등 수시 확인을 통한 성능 유지

○ 저수조(물탱크) 관리대책

가. 저수조(물탱크) 청소

- 1) 청소 실시 및 횟수: 연 2회(반기별 1회) 실시
- 2) 청소 방법
  - 가) 저수조 청소대행업자 실시: 저수조 청소대행 등록업체에서 실시하고 청소·소독 완료필증 비치
  - 나) 자체실시(교직원 등): 자체실시 근거자료를 비치하고 청소 과정의 전·중·후 사진(날짜 기록) 첨부

나. 저수조(물탱크) 관리 요령

- 1) 학교장은 저수조(물탱크)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매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할 것**  
 ※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참고자료 6】
- 2) 물탱크에 뚜껑 설치 및 시건장치를 하고 “관계자 외 접근금지” 표식을 부착
- 3)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해야 함

□ 행정사항

- 모든 수질검사 대상 시료 채수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담당자 또는 수질검사 기관 채수자가 직접 채수·봉인한 후 수질검사 기관에 분석의뢰
- 학교 먹는 물 급수시설 변경 및 수질검사 부적합 결과 제출 철저

가.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학교가 분기별 수질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나. 급수시설 변경 및 부적합 수질검사 조치결과 제출【서식 2】,【서식 3】

- 학교 먹는 물(지하수, 수도물, 정수기 물)의 관리실태 파악 및 지도·감독철저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자체계획에 따라, 지하수 및 정수기에 대한 표본 수질 검사 및 먹는 물 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계획 (2019. 3월~ 12월)
-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전체 정수기 중 10% 이상 정수기에 대하여 연중 1회 이상 불시 자체 표본 수질 검사(특별점검) 및 학교 먹는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 할 것

※ 예) 관내 500대의 정수기가 있는 경우 50대에 대하여 연중 1회 이상 검사  
가. 점검기간: 매분기(1,2,3,4분기)

나. 점검대상: 2017년~2018년 정수기 및 각종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횟수가 1회 이상 있었던 학교를 중심으로 불시 표본 검사 실시

다. 중점 점검사항

- ▶ 정수기 관리실태 확인: 필터 적기교체여부, 위생관리 실태 및 수질검사 실시 여부
- ▶ 정수기 표본검사 실시: 2개 항목(총대장균군, 탁도)
- ▶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및 관리실태 확인: 음용 저수조 사용 시 1년 주기 수질검사 실시, 청소 실시 현황, 위생점검부 비치 및 작성 상태
- ▶ 옥내급수관 일반검사(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확인
- ▶ 지하수 관리실태 확인: 수질검사 실시여부, 정수시스템시설 설치 여부 등
- ▶ 자체 표본 수질 검사에 대한 **매분기별 실적 제출【서식 4】**

- 학교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별 책임 있는 관리 필요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부실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 철저 및 학교 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별도 조치 강구

## 2.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질 유지·관리 강화

### □ 기본방침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여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 □ 관련 법령(지침)

-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교육부】

### □ 현 황

- 기존학교는 실내 공기질을 교실의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항목과 항목별 측정시기 등을 차등하여 적용
  - 교사(校舍)내 공기질 측정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2종에 대하여 대상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시
  - 2018년 실내 공기 질 측정 현황(기존학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 단설유	계	측정비율
대상 학교	423	209	133	30	795	100%
측정 학교	423	209	133	30	795	

\* 학교 수에 분교 포함

- 각급 학교별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실시
- '18.3월부터 교사 내 공기 질 점검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sub>2.5</sub>) 추가됨에 따라 향후 개별 학교별 공기 질 점검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신축(증·개축)학교는 실내 공기질 유지항목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외 개별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측정 의무화
  - 개별유기화합물(VOCs):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5종은 측정 후 고지

## 전라북도교육청

- 기준초과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 등을 실시한 후 2, 3차 측정
- 정기적인 교실 환기, 휴일과 방학을 이용한 Bake-out 실시, 비품 구입 시 친환경제품 사용 등 저감 조치 강구

★ **베이카아웃(Bake-out):** 실내온도의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 재료에서 방출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환기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 방법  
모든 창문을 닫고 난방 온도를 30~40℃에서 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3회 이상 실시

- 교사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15. 6월, 국민권익위원회)
  - 공기질 점검을 위한 표본 선정의 합리성 제고 및 측정과정의 통제강화,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방안 강구

## □ 추진방향

### 가. 교사(校舍)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 1) 교사(校舍)내 환경위생관리 체계 구축

가)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당해 학교의 업무 형편에 따라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지정 운영(업무형편에 따라 복수지정 가능)

#### 2) 학교 환경위생 점검(일상, 정기 및 특별점검) 시행 철저

가) 교육장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대상: 관내 모든 국·공·사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19년 신설학교 포함)

나)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 **일상점검:** 매 수업일 실시, 별도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확인, 교실은 담임교사, 기타 시설 및 장소는 환경위생관리자가 실시 【참고자료 10】

-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학교별 자체예산으로 전문측정기관에 측정의뢰 실시**

· 점검항목: 교사내 환기, 채광 및 조도, 실내온도 및 습도, 소음, 공기질 등

☞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 【참고자료 9】

- 점검시기: 하절기(3월 ~ 하계방학 전까지), 동절기(9월 ~ 동계방학 전까지)
  - ※ 전문기관(검사 대행기관) 공기질 측정 검사의뢰 및 점검시기 완료 기일(하동계 방학전까지)을 준수하여 제출 만기일 지연되는 사례 없도록 할 것
- 공기질 측정 후 기준초과 항목 발생 시 반드시 저감조치 실시 후 2, 3차 재측정 의뢰
  - **특별점검:** 학교를 신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등을 하였거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들여올 때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측정기관에서 실시

### 3) 교사(校舎)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강화

- 가) 공기질 점검 시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에 따른 측정방법 등 준수 철저
    - ※ 라돈 등 점검방법 부실 등에 대한 방송 및 언론 지적사례
  - 나) 공기질 측정을 위한 표본교실은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시설 방문 후 직접 선정(학교 관계자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한 측정장소 등 안내 협조)
  - 다) 공기질 점검 대상 교실이 ‘부적합’ 판정 시 해당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교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및 취약요인 개선 조치(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측정 시 전체 교실 대상 무작위 표본 선정 후 재측정-1차 측정 교실 포함)
  - 라) 공기질 측정결과서 작성(제출)시 측정상황(사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마)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질 측정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불시 현장점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 포함) 참관 등을 통한 통제방안 마련
  - 바) 환경위생 관련 점검실적 제출서식 개선(재측정 단계별 적합여부 확인)
- ### 4) 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가) 각 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홍보 추진**
  - ※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질 점검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단설 및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측정항목 및 지점 검토(유치원 환경관리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기질 점검 등 환경위생 관리현황 정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철저)

### 나. 교사(校舎)내 공기질 관리강화

- 1)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점검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가) 공기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기계적 보조장치 설치 금지
  - 나) 기계적 보조장치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사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고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정·설치
- 2)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교사(校舎)내 환경위생 관련규정 적용 철저
  - 가) 학교설립·인가(학교 설립계획)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및 조치
  - 나) 학교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
    - ※ 책상, 의자 등 학교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6. 9월)
  - 다)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 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학교 교사(校舎)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공기질 측정
    - ※ 측정항목: 7개 항목(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다만, 개별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준수여부 확인
      - ※ 벤젠( $30\mu\text{g}/\text{m}^3$  이하), 톨루엔( $1,000\mu\text{g}/\text{m}^3$  이하), 에틸벤젠( $360\mu\text{g}/\text{m}^3$  이하), 자일렌( $700\mu\text{g}/\text{m}^3$  이하), 스티렌( $300\mu\text{g}/\text{m}^3$  이하)
  - 라) 특히, 기숙사를 신축, 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 시에는 반드시 개별 유기 화합물의 기준 준수여부와 초과여부 확인(100실 이하 2지점, 100실 이상 3지점, 이후 100실 초과시 1지점 추가)
  - 마) 측정기관: 신축(증·개축) 당해 연도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한 전문기관
  - 바) 공기질 측정 시에는 반드시 교육기자재(책상, 결상 등)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 실시
    - ※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교육시설은 반드시 저감 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사용
- 3) 라돈 발생 취약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 철저
  - 가) 라돈 유지기준 대상시설은 기존 '지하교실'에서 '1층이하 교실'로 확대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별표 4의2] 개정(2017.3.1.부터 시행)

- 나) 라돈 점검결과를 토대로 교실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조치 강화
- 다) 라돈 고농도 의심지역 내 학교의 경우 환기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 4) 교사 내 공기질 유지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sub>2.5</sub>)추가 → 정기점검시 초미세먼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5) 교사 내 공기질 관리항목 중 미세먼지(PM<sub>2.5</sub>) 및 폼알데하이드 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18.12월~)
- 6)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교실 및 체육관 주기적인 청소 철저
  - ※ 체육관 임대수입 및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연1회 이상 체육관 청소
- 7)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철저
  - 가) '18~'20년 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상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적극 추진
  - 나) 천식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교 내 특정장소 내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교가 없도록 적극 조치
  - 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요령 등에 대해서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준수 철저

## □ 행정사항

- 환경위생 점검결과(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공기질 측정 등 포함)제출 철저
  - 2019년 환경위생 점검결과는 NEIS 및 업무관리시스템 병행 제출 【서식 5】
  -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 입력 제출 사항
    - 제출대상: 유(공립 단설)·초·중·고·특수학교(국·공·사립)
    - 제출방법: NEIS 입력 제출
    - 제출일: 각급 학교(상반기 6.21, 하반기 12.20)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상반기 6.28, 하반기 12.27) → 도교육청
  - ※ 해당 학교에서 직접 NEIS 입력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 제출 자료를 취합검토 후 도교육청에 전송하여야 하는 바, 점검결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점검 실시 후 입력할 것

### 3. 학교 소음방지 관리

#### □ 기본방침

- 도로 및 철도·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 성장기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 관련 법령(지침)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항공법 제107조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수립 등】

#### □ 현 황

- 학교 외부소음이 관련규정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공소음 피해학교  
- 2018년도 피해학교 없음

#### □ 추진방향

- 학교 소음피해 방지대책 추진

가. 매년 상반기 중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조사한 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 실시(보통소음계 이상)

- 소음도가 높거나 방음대책이 필요한 학교는 전문 측정 기관에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공식적으로 소음도 측정 의뢰

나. 소음도 측정결과 도로 및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등 허용기준 초과학교에 대하여는 소음발생원 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요구

다. 소음유발지역, 소음피해 지역에 학교를 나중에 설립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

라. 소음피해 예상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반드시 충분한 방음시설을 학교기본설계에 포함하고, 그 유지비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야 함

- 학교 교사(校舎)내 소음 측정은 학교 환경위생점검 시 공기질 측정과 병행하여 학교별로 전문기관 측정 의뢰 실시
  
- 항공기 소음 관련 방음대책
  - 가.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소음 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는 시설 인수자(학교 및 교육청)가 유지비용을 부담
  - 나. 이중창의 노후화로 밀폐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방음창 개·보수 및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 4.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보호에 기여
- 학교에서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복도, 계단, 화장실, 유리창, 체육관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사업 추진

### □ 사업 대상 현황

- 2018년도 지원 실적: 3,863,220천원
  - 지원대상(287교): 단설유치원(15), 초(264), 특수(8)
    - ※ 분교(5교), BTL학교(6교), 학교시설유지관리 대상학교(153교) 제외
  - 지원기준
    -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하반기 용역근로자 직고용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 지원
- 2019년도 예산지원 계획: 52,000천원
  - 지원대상(4교): 사립특수학교
  - 지원금액: 1교당 13,000천원(전년과 동일)
    - ※ 2019학년도 공립 유, 초, 특수학교 청소원 인건비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19.3.1. 기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 행정사항

-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월말까지 계약완료, 3월부터 사업시행
- 학교 기본운영비(경상목적사업비)로 배부된 동 사업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2019년 사업 예산 집행결과 정산 실시(추후별도 공문 통보 예정)
- 학교상황에 따라 자체 예산 등을 포함하여 운영가능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한 학교별 자체평가 추진
  - 평가지표: 일자리 수/ 수요자의 만족도/ 학교의 청결지수 등

## Ⅱ.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2.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3.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 기본방침

-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등 관련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

### □ 관련 법령(지침)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전라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 전라북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 □ 현 황

-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 정례화
  -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 적발업소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상호간 정보 공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법인 및 종교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만 적용)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로 포함('17.12.19 개정 / '18.3.20. 시행)
  - 소방기관 내 소방·의료용으로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17.12.12. 개정·시행)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관련 의결기준 조정
    -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명령을 위한 심의 시 의결기준 조정(과반수 참석, 2/3 이상 찬성→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와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 조정('17.12.12 개정·시행)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구분	현행	개정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건축허가를 받기 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결과 회신기한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교육부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18~'22)』 수립·시행('17.12.4.)
  -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 포함
    - \* 5개 영역(교육환경평가 내실화,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강화,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교육환경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학교 주변 유해시설 관리강화 및 인식제고) 10개 세부 실천과제 포함
  - 시도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
  -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업무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18.2.14)

**□ 추진방향**

**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 수립('18.12.31.)
  -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수립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에 대한 이행 및 관리 철저 →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지원기능 강화

- 교육환경보호원이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기존 교육환경보호지원 기능 외 미세먼지, 라돈 등 교사 내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한 전문 지원기능 등 추가 검토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지판을 새로운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으로 대체(학교별 또는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 교체 추진)
  - 설정범위

절대 보호구역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 보호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설립 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장은 학교설립 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업무 철저

- 학교 설립예정지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철저
- 각급학교(대학 포함)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설정 학교 및 잘못 고시된 경우 즉시 조치
  - ※ 실제 학교의 위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의 일치 여부 등의 검증 조치 필요
-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등에 따른 보호구역 조정 고시 철저
-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설립 또는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다.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철저

##### ○ 교육환경평가제도 검토기능 강화

-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는 반드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45일 이내에 통보

※ 민원처리 기간을 고려한 교육환경보호지정기관 및 관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검토 기간 준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요청 →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회신)

-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결과 불승인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및제2항, 시행규칙 제6조)

##### ○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학교설립예정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전까지 학교 설립예정지에 준하여 관리하고, 해당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교육청 홈페이지에 설립예정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도를 게재하고, 관련 현황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차단

##### ○ 교육환경평가시스템 적극 활용

-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개정('18.12.31.공포 / '19.4.1. 시행예정)

-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으로 교지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장(장외매장 포함) 및 사행행위 시설의 현황 조사 의무화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동 현황 고려

#### 라.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제도 운영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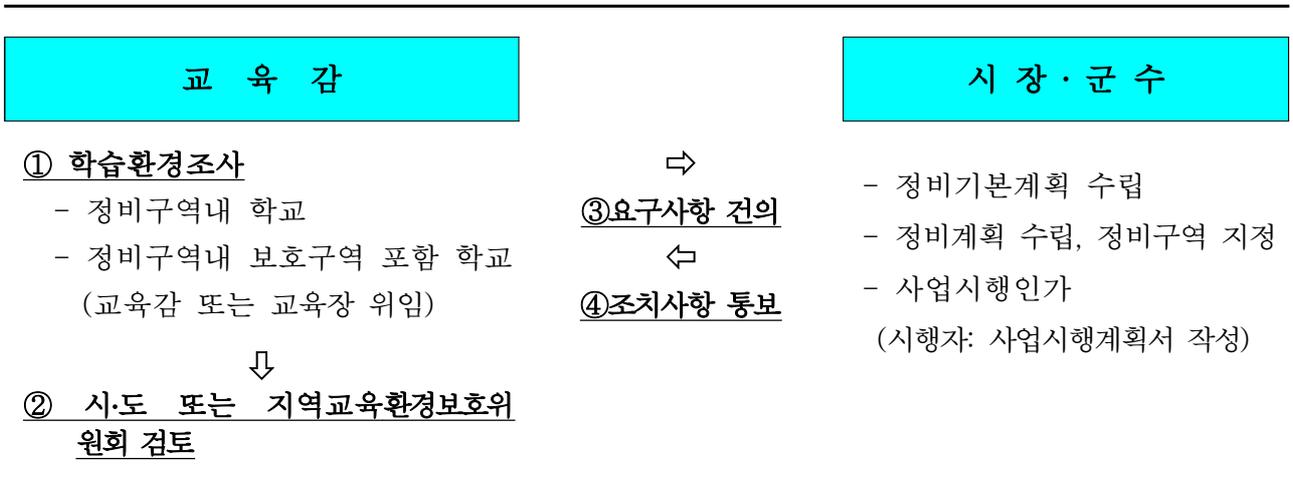
##### ○ 학습환경보호계획 수립 등 사전 보호조치 강화

- 학교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포함될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학습환경조사를 통한 학습환경 등 지장 초래 유무 사전 확인·조치
- 학교급별 학습환경 조사자(교육장): 유치원, 초, 중학교, 고, 특수학교

○ 학습환경조사 철저

- 재개발·재건축 지역 인근 학교에 대한 학습환경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 학습환경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노력 필요
-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 통학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및 자치단체와 협력

< 정비구역내 학습환경 보호 절차 >



○ 학습환경 조사 기준 및 내용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참조)]

평가 대상		평가 기준
1. 위치	가. 일반사항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나. 통학범위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다. 통학안전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라. 통풍·조망 및 일조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크기·외형	가. 교지면적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나. 교지형태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3. 지형 및 토양환경	가. 지형 및 경사도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나. 풍수해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양환경 등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
	4. 대기 환경	가. 대기 질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나. 소음 및 진동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5. 주변 유해 환경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나. 위험시설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4)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5)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협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공공 시설	가. 기반시설	학교의 상·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나. 그 밖의 공공시설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에 따른 대국민 홍보 강화

- 새롭게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을 통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리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력 제고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지도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학 생	1.9	8.4	21.4	30.5
교직원·학부모	8.2	29.6	51.0	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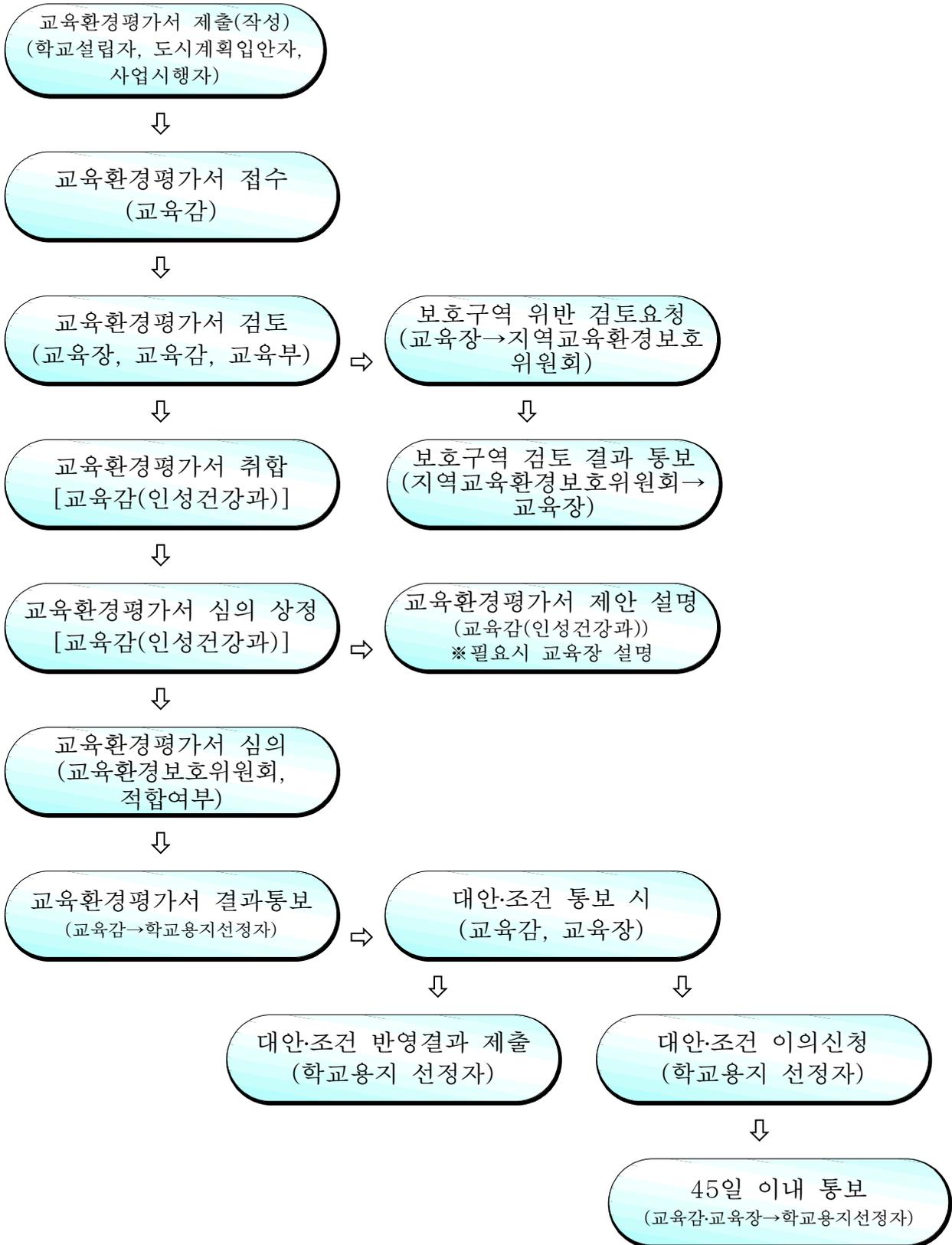
\* 근거 : 교육부 제1차 교육환경기본계획(2017.11.)

- 교육환경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 구성원 대상 인식도 조사 실시('19.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대상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도 조사 실시(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유해인식도 조사 포함)

바.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안전대책 강화방안 마련

-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위해관리계획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에 정기 현황조사 및 해당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현황 파악
-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를 대상으로 주민고지 내용 확인 및 학교 구성원 대상 교육 및 관련제도 홍보 안내
- 긴급상황을 고려한 학교 내 대응체계 강화 등 조치 강화(긴급상황을 고려한 대응요령에 대한 훈련 등)

< 교육환경평가 업무 흐름도 >



## 2.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 기본방침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유지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 □ 관련 법령(지침)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9조(도), 제10조~15조(지역)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 현황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주변의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의·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학교주변의 각종 유해업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지역에서는 유해업소 설치를 합법화시켜주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음

### □ 추진방향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설 치: 교육지원청
  - 기 능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심의
- 학교설립예정지 선정 시 주변지역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등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참고자료 7】 참조

- 구 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상 17명 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교육장의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교육장이 임명·위촉 다만,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 **위원의 임기는 2년(공무원은 당해직위 재직기간), 1차 연임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이고 위원정수의 최소기준(13명)에 미달되지 않을 때에는 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통합안내시스템을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학교주변 토지 이용 정보제공 및 보호구역에 포함 여부 확인 등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보호구역제도 홍보
- 교육환경보호구역 통합안내시스템 적극 이용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학생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시 보호위원의 현장 확인 및 철저한 분석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필요
- 지역보호위원회 심의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학부모 참관 조치. 민원인의 기피 신청, 학교장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 등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적극 준수
- 교육지원청별 심의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심의결과 해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심의결과 분석 등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학교장 의견 적극 반영**

- 보호위원회 심의 시 가급적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장 의견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 의견 적극 반영

- 현장조사 내용을 근거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비치

○ 이의신청 방법 안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 불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안내

※ 학교장 의견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로 인하여 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 초래 및 행정심판 청구 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 철저

○ 건축 및 영업 인·허가(등록·신고)전 사전 심의제도의 정착

- 인·허가(등록·신고) 업무 담당부서의 잘못으로 건축·영업허가(등록·신고)후 사후심의에 따른 민원유발 및 재산피해 사례 방지
- 인·허가(등록·신고) 행정기관의 민원봉사실, 건축설계 사무소, 관련협회, 반상회보 등에 안내 및 홍보 강화

○ 교육환경보호 관련 행정심판·소송 수행 시 적극적 대응

- 보호위원회 심의자료를 충실히 작성하고, 보호위원의 현장 확인(실사) 및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 확보로 민원발생 억제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관련 회의록 등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유지하여 충분한 근거자료 제공
- 소송담당 부서와 업무담당 부서간의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 유지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및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제도 및 심의위원으로서의 전문성 함양,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한 연수 등 개최(연 1회 및 위원 교체 시)
- 교육환경보호제도 및 보호구역관리, 보호위원회 심의업무 처리요령 등에 대한

담당자 교육실시

- 교육환경 보호업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강화

○ 대민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 On-Line 서비스 운영
  - 민원인이 해당교육지원청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심의 신청
  - 교육지원청 방문 등에 따른 불편 해소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 민원인과 불필요한 접촉 금지
  - 민원상담은 담당부서의 공개된 장소에서만 상담을 하고 불필요한 접촉 금지
  - ONE STOP 민원처리: 민원서류 보완은 FAX, 이메일 및 우편 등의 활용으로 민원인 재차 교육지원청 방문금지
- 민원인에게 보호구역 제도 홍보
  - 방문한 민원인 및 민원결과 회신 시 보호구역 제도 안내, 보호위원회 심의처리 과정, 이의제기 방법(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공무원의 청렴 유지 사항, 부패신고 협조 등의 홍보자료 배부
  - ※ 민원서류 대리 신청 시 실제 민원인에게 유선 등으로 심의제도 적극 안내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진행 과정 알림서비스 제공
  - 제공방법: 문자알림 서비스 또는 이메일
  - 제공시기: 결과통보 예정일(접수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일 등

[ 예시문 ]

- ◇ 귀하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한 결과는 00월 00일 통보될 예정입니다.
- ◇ 귀하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한 결과는 00월 00일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행정사항

- 보호위원회 심의대장 관리: 심의결과 민원인 통보시 NEIS 등록 병행
- 2019년도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소송현황 제출 【서식 6】

### 3.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 □ 기본방침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난립 및 불법운영 방지를 통한 학교 학습환경 보호·유지

#### □ 관련 법령(지침)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4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 현황

- 교육지원청의 업소들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유해업소 형식적·소극적 지도단속
- 학교교육활동에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학교 구성원들의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의지 부족

#### □ 추진방향

- 학교장(보호구역 관리자)의 정기점검·홍보 강화
  - 학교실정에 맞는 점검반 운영(교직원, 학교운영위원등 학부모 포함)
  -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점검 방지를 위하여 계도문, 점검활동 영상물, 점검 일지 기록 등 실적물을 보존하고 활동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홍보
  - 교육수요자 및 지역민 홍보 강화(가정통신문 발송, 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설명회시 학부모에게 보호구역 제도 소개)
- 교육장(보호구역 설정자)의 민관 합동지도단속 강화
  - 인·허가기관 등 유관기관, 도교육청, 교육장, 시민단체 등 인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민·관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 불법사항 적발 시 인·허가기관에 보호요청 등 적극 대처
  - 업주 계도문 배포

□ 추진계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 실시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구분	정기점검	수시점검	점검결과 처리
보호구역 설정자 (교육장)	<b>연1회 이상</b> (점검계획 수립)	- 보호구역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학습환경 저해내용을 허가(등록·신고)기관에 통보(요청)하거나 교육환경보호법상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보호구역 관리자 (각급학교장, 유치원장)	<b>연2회 이상</b>	-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변동사항을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 - 점검결과 학교 학습에 피해를 주거나 불법사항 발견 시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행정관청이나 경찰서에 신고)

※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3월, 9월 예정)시 적극 협조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신·변종업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작성 및 관할 경찰서, 자치단체 등과 공유
- 보호구역 실태점검 시 업태위반 사례(예,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색출·고발조치
- 학교별로 보호구역 내 각종업소(불법 영업시설 포함)의 위치를 표시한 보호구역관리도 비치
- 고질적 유해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철거 등을 위한 적극행정 조치 요청
- 여성가족부 고시업종(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등), 자유업종 무단설치로 인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관할세무서에 등록 시 교육지원청에 확인 요청 협조

## □ 행정사항

- 교육지원청은 자체계획(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립 후 합동단속 실시
  - 활동실적은 반드시 기록 등재 바람(활동사진, 점검표 작성, 계도문 등)
  - 상·하반기 민·관 합동단속 결과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서식 7】
-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단속 활동 전개
  - 위반사항 적발 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
    - \* 고발 요령 및 절차 【참고자료 8】 참조
- 점검(단속)실적 제출: NEIS 입력 및 수기 제출 병행 【서식 8】
  -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현황
    -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현황 등록, 각종 업소등록, 보호요청 및 고발 현황 관리, 고발업소 명단 관리, 정비된 업소 현황 관리
    - NEIS 입력(단위학교, 교육지원청)
  - 수기 제출(교육지원청): 매반기말까지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서식 8】



---

## Ⅱ. 행정 사항 요약

---

1. 제출 목록
2. 제출 서식



# 1. 제출 목록

제출 사항	제출기한		제출 방법	제출 대상	지정 서식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실적	분기별 수질검사 종료 후 5일 이내	분기말 기준 (1,2,3,4분기)	NEIS, 업무관리시스템 병행 제출 (학교:NEIS제출)	유(공립 단설)·초·중·고·특 ('19년 신설학교 포함) 및 교육지원청	서식 1
학교 먹는 물 시설 개선실적	시설개선 후 즉시	시설개선 후 즉시	업무관리시스템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서식 2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조치결과	검사결과(부적합) 공문 접수 후 즉시	부적합에 따른 조치결과 공문 접수 후 즉시	업무관리시스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	서식 3
정수기 특별점검 (표본)결과 제출	-	분기말 기준 (1,2,3,4분기)	업무관리시스템	교육지원청	서식 4
학교 교사내 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실적	6.21(상반기) 12.20(하반기)	6.28(상반기) 12.27(하반기)	NEIS, 업무관리시스템 병행 제출 (학교:NEIS제출)	유(공립 단설)·초·중·고·특 ('19년 신설학교 포함) 및 교육지원청	서식 5
2019년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소송현황	-	2020. 2. 21.	업무관리시스템	교육지원청	서식 6
상(하)반기 민·관 합동 단속 결과	-	6.26.(상반기) 12.23.(하반기)	업무관리시스템	교육지원청	서식 7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추진 현황	교육지원청 별도 안내	6.26.(상반기) 12.10.(하반기)	NEIS, 업무관리시스템 병행 제출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유초중고특대)	서식 8
학교 보호구역내 각종 업소 현황	교육지원청 별도 안내	6.26.(상반기) 12.23.(하반기)	NEIS, 업무관리시스템 병행 제출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유초중고특대)	서식 9
보호위원회 심의대장 등록 관리	-	심의결과 민원인 통보시	NEIS 입력	교육지원청	

## 2. 제출 서식

[서식 1]

###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0분기)

(반기/ 서면, NEIS 병행 제출)

전라북도00교육지원청

####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전체학교수						
시설별 학교수	상수도(A)					
	지하수(B)					
	상수도+ 지하수(C)					
	외부공급					
	계(D)					

\*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이하 동일)

#### 2. 학교내 저수조(물탱크) 이용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상수도 이용교	대상학교수(A)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지하수 이용교	대상학교수(B)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상수도 지하수 공 동 이용교	대상학교수(C)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계	대상학교수(D)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 3.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정수기 설치학교수					
( )분기	검사 대상 정수기수(A)					
	검사 정수기수 (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정수기 외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모든 기기를 포함

### 4.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 )분기	대상 학교수(A)					
	검사 학교수 (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판정수(E)					

[서식 2]

## 학교 먹는 물 시설 개선실적

### 1. 지하수 신규개발(정수시스템 설치 포함)

급별	학교명	학생수	준 공 신고일	공사내용		급식조리여부
				신규개발	정수장치	
						조리교, 비조리교 등

※ 공사내용: 해당내용에 ○ 표시

### 2. 상수도 인입(간이상수도 포함) 완료 상황 제출

급별	학교명	학생수	인입공사 완료일	급식조리여부	비고

※ 저수조(물탱크)를 경유하는 상수도 인입공사 완료 시 제출  
간이상수도의 경우 비고란에 별도 표기

### 3. 상수도 직결급수 완료 상황 제출

급별	학교명	학생수	직결급수 완료일	개선내용	급식조리여부
					조리교, 비조리교 등

※ 저수조(물탱크)를 경유하지 않는 직결급수 완료 시 제출

[서식 3]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조치결과

### 1.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조치결과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지하수 음용여부	조리교 여부	처리시설 설치 내역	통보 일자	조치 일자	조치 내역	향후 계획
					자동염소투입기, 살균시스템 등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조치사항 안내」 체육보건교육과-20102(2009.10.05)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작성

### 2. 정수기 수질 재검사(1차) 결과

학교명	1차 부적합 정수기 조치내역	재검사 의뢰일	재검사 의뢰기관	재검대상 정수기수	재검결과		비고
					적합 정수기수	부적합 정수기수	

### 3. 부적합에 따른 정수기 철거 현황

학교명	정수기 총 보유 수	철거 정수기 현황			비고
		설치 장소	대수	철거 일자	

※ 부적합 판정 시 제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4]

## 정수기 특별점검 결과( 분기)

전라북도00교육지원청

구분		초	중	고	특수/ 단설유	합계	
00 (지역)	특별점검 학교						
	특별점검 정수기수						
	1차 적합판정수						
	최종 적합판정수						
	부적합 판정수						
	후속 조치	정수기 폐기조치					
		수질검사시기 조정 조치					
		채수구 등 청소상태 시정조치					
		설치장소 시정조치					
		기타					

※ 반드시 엑셀로 제출, 지역교육지원청만 해당, 매분기말까지 제출

[서식 5]

##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실적

(반기/ 서면, NEIS 병행 제출)

전라북도00교육지원청

### 1. 정기점검 실적

####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전체 학교수						
점검 학교수	실내환경					
	공 기 질					
	일반환경					

※ 작성요령: “실내환경”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점검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4호) 제2호의 ‘실내환경 측정결과’이고, “공기질”은 제3호의 ‘공기질 등 측정결과’이며, “일반환경”은 제4호의 ‘일반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을 말함 (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

#### 나. 공기질 측정실적(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점검 기관 (일반)	학교자체					
	교육청					
	외부기관					
	계					

※ 작성요령: “점검기관”은 공기질 중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측정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학교수를 말함(외부기관은 전문대행기관임)

#### 다.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PM10 ( $\mu\text{g}/\text{m}^3$ )															
PM2.5 ( $\mu\text{g}/\text{m}^3$ )															
CO <sub>2</sub> (ppm)															
HCHO ( $\mu\text{g}/\text{m}^3$ )															
총부유세균(CFU/m <sup>3</sup> )															
낙하세균 (CFU/실)															
CO (ppm)															

전라북도교육청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NO <sub>2</sub> (ppm)															
Rn (Bq/m <sup>3</sup> )															
TVOC (μg/m <sup>3</sup> )															
석 면 (개/cc)															
오 존 (ppm)															
진드기 (마리/m <sup>2</sup> )															

※ 작성요령: 1차 측정결과 적합 시 **적합란(1차)**에 기재, 재측정 결과 적합 시 **적합란(최종)**에 기재, 최종 측정결과 부적합 시 **초과란**에 기재

2. 특별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신축3년 이내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증개축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기 타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 작성요령: 특별점검 사유별로 점검을 실시한 학교수를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 사유 명시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μg/m <sup>3</sup> )															
TVOC (μg/m <sup>3</sup> )															
벤 젠 (μg/m <sup>3</sup> )															
톨루엔 (μg/m <sup>3</sup> )															
에틸벤젠 (μg/m <sup>3</sup> )															
자일렌 (μg/m <sup>3</sup> )															
스티렌 (μg/m <sup>3</sup> )															

※ 작성요령: 폼알데하이드(HCHO)는 점검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측정결과를 작성

### 3. 신설학교 점검 실적

####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3월 개교					
	9월 개교					
	계					

####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특수/단설유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 $\mu\text{g}/\text{m}^3$ )															
TVOC ( $\mu\text{g}/\text{m}^3$ )															
벤젠 ( $\mu\text{g}/\text{m}^3$ )															
톨루엔 ( $\mu\text{g}/\text{m}^3$ )															
에틸벤젠 ( $\mu\text{g}/\text{m}^3$ )															
자일렌 ( $\mu\text{g}/\text{m}^3$ )															
스티렌 ( $\mu\text{g}/\text{m}^3$ )															

※ 특별점검, 신설학교 점검 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초과여부 기재

#### ○ 환경위생 점검결과(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공기질 측정 등 포함)결과 철저

- 환경위생 점검결과를 NEIS 제출

-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 입력 제출 사항

· 제출대상: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교육지원청 취합검토)

· 제출방법: NEIS 입력 제출(매뉴얼은 인성건강과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

· 제출일: 각급 학교(상반기 6.21, 하반기 12.20)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상반기 6.28, 하반기 12.27) → 도교육청

#### ※ 하반기 실적 제출 시 상반기 포함 누계 제출

※ 해당 학교에서 직접 NEIS 입력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 제출 자료를 취합검토 후 도교육청에 전송하여야 하는 바, 점검결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점검 실시 후 입력 할 것

## 2019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현황

전라북도00교육지원청

### 1. 소송(심판) 현황

구 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제기건수					
인용건수					

※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최초심이 2018년 이전이라도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하되, 인용건수는 교육청 기준으로 기재

### 2. 금지행위 및 시설별 소송(심판) 건수

구 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PC방										
당구장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가스관련 제조소·저장소										
숙박시설										
기타										
계										

[서식 7]

## 2019. 상·하반기 민관합동단속 결과

전라북도○○교육지원청

### 1. 민관합동단속 실시 현황

단속일시	단속반 참여인원				
	행정공무원	경찰	교육청/ 교직원	학부묘/타	계
2019.00.00. 00:00~00:00					

### 2. 민관합동단속 결과

단속결과 조치건수						단속업소수*	비고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철거 등	경고/시정	계		

\* 단속업소수는 단속 대상이 된 업소의 수임

※ 첨부서류 : 출장복명서 및 관련사진

[서식 8]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

(반기 / 서면, NEIS 병행)  
 기관명 :                      교육지원청

### 1. 교육환경보호구역 순회점검 실시

구 분	실시대상 학교수*	점검실시 횟수	참 여 인 원	활동 내용(건수)			
				유해업소 신고(통보)	불량광고 벽보제거	업소계도 전단배포	계
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자						
	계	X					
누 계	X						

\* 유 ( )교, 초 ( )교, 특수 ( )교, 중 ( )교, 고 ( )교, 대학( )교, 충 ( )교

※ 작성요령

- 관련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실시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된 모든 학교
- 실시회수: 교육감이 정한 횟수 또는 교육장,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중복 기재)
- 활동내용: 교육환경 저해행위 또는 유해업소 무단설치 실태파악, 관할 교육청에 통보 및 금지행위 단속요청(시·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 등

### 2. 단속대상 정보자료 수집통보

구 분	통보건수	위반사례 통보처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파출소)	시·군·구청
반기	서면통보				
	유선통보				
	계				
누 계					

### 3.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현황

#### 3-1. 심의건수

구 분	심의건수	해제		금지		전체 교육환경 보호 위원 현장방문 건수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반기						
누 계						

#### 3-2. 업종별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	해제		금지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 화장, 봉안, 자연장지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16	미니게임기					
17	당구장					
18	무도학원					
19	사행행위장 등					
20	노래연습장					
21	비디오감상실업					
22	유흥·단란주점					
23	숙박업, 호텔업					
24	만화가게					
25	사고대비물질					
누 계						

4.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4-1. 참여인원

구 분	행정공무원	경 찰	교육청/교직원	학부모/기타	계
반기					
누 계					

4-2. 적발내용

구 분	퇴폐00	무허가영업	미성년자출입목인	준수사항 위반등	계
반기					
누 계					

4-3. 위반업종별 현황

구 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 반 음식점	게임관련 시 설 등	노 래 연습장	만화가게	비디오물 관련시설	기타업소	계
반기								
누 계								

4-4. 위반업소 조치현황

구 분	고 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시정	기타	계
반기						
누 계						

※ 교육청 또는 학교 교직원 등의 참여하에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을 보고 대상으로 하고, 교육청(학교)의 참여 없이 타기관의 실적은 보고에서 제외

4-5. 퇴폐음란물 압수/폐기 실적

구 분	게임관련시설		만화대여업		비디오물관련시설		문구점/기타		계	
	업소수	점수	업소수	점수	업소수	점수	업소수	점수	업소수	점수
반기										
누 계										

※ 4-2, 4-3, 4-4의 계는 동일하여야 함.

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유예기간 초과시설)

5-1. 시설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제한영화상영관														
2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3	도축·화장·봉안시설														
4	폐기물 수집장														
5	유·홍·단란주점														
6	호 텔														
7	여 관														
8	여인숙														
9	당구장														
10	전용게임장														
11	만화가게														
소계('95년말까지)															
12	무도학원/무도장														
13	노래연습장														
14	담배자판기														
소계('98년말까지)															
15	전화방														
16	성기구취급업소														
소계(즉시)															
17	비디오물감상실														
소계('02년말까지)															
18	멀티게임장(PC)														
소계('04년말까지)															
19	경륜·경정장														
소계('09년말까지)															
20	미니게임기														
소계('08.8.4까지)															
21	신변중 업소														
소계('11.7.20까지)															
합 계															

※ 현재 미정비 잔여시설에 대하여 작성(6-1에 따른 무단 설치시설은 제외)

5-2. 이전·폐쇄 대상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구 분	정화요청/고발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계
	정화요청 건 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 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정화구역조정	
반기								
누 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는 학교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 누가기록

5-3. 고발업소 명단

연번	고발일자	고발자 (기관명)	고발처	고발내용		
				업소명	업주명	위반내용

5-4. 정비된 업소현황(연간누계)

정비기한별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관리학교명	정비일자	조치내용

※ 작성요령

- 정비된 업소현황은, 위 5-2번 통계의 이전·폐쇄 조치내용의 업소수와 같아야 함
- 모든 지정된 제출서식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 서식안의 내용은 한글 신명조체 12포인트로 작성요망
- 특히, 통계수치는 정확히 작성하여 집계 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
- 지정된 제출기일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기일 엄수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무단 설치시설)

6-1. 시설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 화장, 봉안 자연장지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중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16	미니게임기															
17	당구장															
18	무도학원															
19	사행행위장 등															
20	노래연습장															
21	비디오감상실업															
22	유흥단란주점															
23	숙박업 호텔업															
24	만화가게															
25	사고대비물질															
	합 계															

※ 5-1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시설은 제외

전라북도교육청

6-2. 무단 설치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구 분	정화요청/고발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정화요청 건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정화구역조정	계
반 기								
누 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 누가기록

6-3. 무단 설치업소 현황

학교명	보호구역구분	업종	업소명	최초적발일자	조치일자	조치내용

※ 작성요령

- 6-1의 무단 설치시설의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 보호구역 구분은 상대, 또는 절대로 작성
- 업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업종으로 작성

[서식 9]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서면, 6.30기준)

기관명 : 교육지원청

###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 계																

※ 작성요령

- 유치원과 대학(교)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상 금지행위 및 시설대상만 작성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금지시설에서 해제 결정된 업소만을 기재(단, 낚골시설의 경우 설치를 인정받은 경우는 포함)
- 미음영 처리부분 해당사항 기재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 계															

※ 작성요령

- [서식 제8호]의 5-1, 6-1에 따른 이전·폐쇄업소 및 무단 설치시설 현황(2분기)을 합한 시설수와 동일하게 작성

## □ 참고 자료

1. 2019년도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2. 지하수 정밀수질검사 46항목
3.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 표지판
4. 학교내 정수기의 위생관리 방안
5.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카드
6.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7.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8. 고발요령 및 절차
9.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
10.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일상점검 사항



【참고자료 1】

2019년도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 분	2018년도 주요내용	2019년도 변경내용	비 고
학교 교사(校舎)내 공기 질 유지·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강화</li> <li>공기질 점검 시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기준’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에 따른 측정방법 등 준수 철저</li> <li>※ 라돈 등 점검방법 부실 등에 대한 방송 및 언론 지적사례</li> </ul>	<p>&lt;추가&gt; 15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li> <li>※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질 점검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단설 및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측정항목 및 지점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li> <li>※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질 점검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단설 및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측정항목 및 지점 검토(유치원 환경관리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기질 점검 등 환경위생 관리현황 정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철저)</li> </ul>	<p>&lt;추가&gt; 15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li> <li>※ 학교 교사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지침 준수 철저(인성건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li> <li>※ 학교 교사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지침 준수 철저(인성건강)</li> </ul>	<p>&lt;삭제&gt; 16쪽</p>

구 분	2018년도 주요내용	2019년도 변경내용	비 고
	과-10720, 2011. 12. 15.)	<del>과-10720, 2011. 12. 15.)</del>	
	<신설>	- 교사 내 공기질 관리항목 중 미세먼지(PM <sub>2.5</sub> ) 및 폼알데하이드 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18.12월~)	<추가> 17쪽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철저</li> <li>- '18~'20년 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상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적극 추진</li> <li>- 천식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교 내 특정장소 내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교가 없도록 적극 조치</li> <li>-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요령 등에 대해서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준수 철저</li> </ul>	<추가> 17쪽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li> <li>※ 분교, BTL학교, 학교시설유지관리학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사립특수학교</li> </ul>	<변경> 20쪽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환경보호원 설립 추진 (교육부)</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교육환경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교육환경보호원 설립 추진 (교육부)</del></li> <li>- <del>「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교육환경보</del></li> </ul>	<삭제> 24쪽

구 분	2018년도 주요내용	2019년도 변경내용	비 고
	회원) 설립 추진	<del>회원) 설립 추진</de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업무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18.2.14)</li> </ul> </li> </ul>	<추가> 24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지원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환경보호원이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li> <li>- 기존 교육환경보호지원 기능외 미세먼지, 라돈 등 교사내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한 전문 지원기능 등 추가 검토</li> </ul> </li> </ul>	<추가> 25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환경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개정(‘18.12.31.공포 / ‘19.4.1. 시행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으로 교지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장(장외매장 포함) 및 사행행위 시설의 현황 조사 의무화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동 현황 고려</li> </ul> </li> </ul>	<추가> 26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환경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 구성원 대상 인식도 조사 실시(‘19.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대상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도 조사 실시(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유해인식도 조사 포함)</li> </ul> </li> </ul>	<추가> 29쪽

구 분	2018년도 주요내용	2019년도 변경내용	비 고
	-	바.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 업장 인근 안전대책 강화방 안 마련 ◦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 업장 중 위해관리계획 작 성·제출 대상 사업장에 정 기 현황조사 및 해당 화학 물질의 사고발생 시 영향범 위 내 학교현황 파악 ◦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를 대상으로 주민고지 내용 확인 및 학교 구성원 대상 교육 및 관련제도 홍 보 안내 ◦ 긴급상황을 고려한 학교 내 대응체계 강화 등 조치 강 화(긴급상황을 고려한 대응 요령에 대한 훈련 등)	<추가> 30쪽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 능 강화 - 교육지원청별 심의현황을 모 니터링하고, 심의결과 해제 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 우 심의결과 분석 등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추가> 33쪽
제출사항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 진현황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 진현황 3-2. 업종별심의현황	서식8호 <추가> 55쪽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 진현황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 진현황 6-3. 무단 설치업소 현황	서식8호 <추가> 60쪽
참고자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종류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지 정소매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종류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del>자 정소매인</del>	참고자료7 <삭제> 75쪽

## 【참고자료 2】

## 【지하수 정밀수질검사 46항목】

검사항목	기준	검사항목	기준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24. 비소	0.01mg/L이하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25. 셀레늄	0.01mg/L이하
3.	대장균	26. 납	0.01mg/L이하
	분원성대장균군	27. 크롬	0.05mg/L이하
4. 경도	1,000mg/L이하	28. 알루미늄	0.2mg/L이하
5.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이하	29. 보론	1.0mg/L이하
6. 탁도	1NTU이하	30. 다이아지논	0.02mg/L이하
7. 냄새	이취없을것	31. 파라티온	0.06mg/L이하
8. 맛	이미없을것	32. 페니트로티온	0.04mg/L이하
9. 색도	5도이하	33. 카바릴	0.07mg/L이하
10. 수소이온농도	5.8 ~ 8.5	34. 1,2-디브로모-3-클로로 프로판	0.003mg/L이하
11. 세제	0.5mg/L이하	35. 페놀	0.005mg/L이하
12. 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36.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13. 불소	1.5mg/L이하	37. 디클로로메탄	0.02mg/L이하
14. 염소이온	250mg/L이하	38. 1,1,1-트리클로로에탄	0.1mg/L이하
15. 질산성질소	10mg/L이하	39. 사염화탄소	0.002mg/L이하
16. 황산이온	200mg/L이하	40. 벤젠	0.01mg/L이하
17. 시안	0.01mg/L이하	4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이하
18. 철	0.3mg/L이하	42. 톨루엔	0.7mg/L이하
19. 망간	0.3mg/L이하	4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이하
20. 동	1mg/L이하	44. 에틸벤젠	0.3mg/L이하
21. 아연	3mg/L이하	45. 크실렌	0.5mg/L이하
22. 수은	0.001mg/L이하	46. 1,4-다이옥산	0.05mg/L이하
23. 카드뮴	0.005mg/L이하		

※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급식시설 및 음용수로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브롬산염 항목을 추가 검사하여야함

【참고자료 3】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 표지판】

( 수질검사 시료 채수방법 )

- ①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는다.
- ② 물을 약 3~5분간 흘려보내 수도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린다.
- ③ 신문의 화염 등을 이용하여 수도꼭지를 멸균 시킨다.
- ④ 수도꼭지를 열어 다시 적당량을 흘려보낸다.
- ⑤ 무균채수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세척한다.
  - 판매용기는 세척 필요 없으며, 대형약국, 화공약품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음
- ⑥ 세균오염에 주의하며 용기에 가득 담아 밀봉 및 봉인한다.

※ 주의사항

- 수질검사 시료채수는 의뢰당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채취 한다.
- 물을 끓이거나 채수병에 소독약을 직접 주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우려해 다른 물을 대신 채수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수질검사 결과 표지판 설치

수 질 검 사 표 지 판		
구 분	정 밀 검 사	간 이 검 사
검 사 일 자	201 년 월 일	201 년 월 일
검 사 기 관	○○○○○	○○○○○
검 사 항 목	일반세균외 45종	일반세균외 5종
검 사 결 과	먹는물로 적합 판정됨	먹는물로 적합 판정됨
관 리 자	직 : _____	성명 : _____
○○○ 학교장		

◆ “음용불가” 표시 안내판 예시문

**경 고 문(안)**

이 지하수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부적합(부적합 내용 기재)하여 여러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 별도의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 물을 직접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학교장

【참고자료 4】

학교내 정수기의 위생관리 방안

□ 정수기 사용과정에서의 위생관리

○ 정수기 설치에 부적합한 장소

※ 총대장균군 및 탁도 등 수질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정수기 토출구를 사용자가 직접 만지거나 접촉금지 등 주의사항을 정수기 외부표면에 상시부착

○ 교환 가능한 취수레버와 에어필터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교환

○ 정수기 내·외부 정기적인 청소·소독실시

- 청소주기 : 6개월 마다
- 청소소독방법 : 고온·고압 스팀소독, 약품과 증기소독 병행 등
- 청소소독의 주체는 관리자로 하되, 위탁 가능함
- 정수기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 유지

○ 수조의 위생적 관리

- 월 1회 이상 세척밸브를 열어 저장탱크의 물을 배수하고, 수조내부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항상 청결유지





【참고자료 6】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 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 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 볏짚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월 1회 점검, 점검자 기재, 2년 보관

【참고자료 7】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금지 시설 업종 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제1호	대기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호	수질	X	X	X	X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제48조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4호	하수 분뇨 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제5호	악취	X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
제6호	소음, 진동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질 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사체처리법」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장, 봉안시설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제10호	도축업장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전야방 상주취급소, 카스탕 대탕상 전담선 매지 유라방 상온PC방 휴게텔 안락호텔방등	X	X	X	X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8),9), 나목7) 여성가족부 고시(2013.08.13)
제14호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 제조, 충전 저장소	X	○	X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수집/보관/처분 장소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에 따른 수집·보관·처분장소 단, 시행령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의한 사업장 수집을 위한 장소는 제외-고물상
제16호	총포/도검/화약 제조소 및 저장소	X	○	X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감염병 격리소/요양 진료소	X	○	X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	-	-	「담배사업법」 (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7호,8호 (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X	○	X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 대학은 제외(2008.08.04)
제21호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단, 유치원, 초·중, 대안학교, 대학 제외]
제22호	경마장/경륜/경정장	X	○	X	○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장외발매소 포함
제23호	사행행위장	X	○	X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	노래연습장업 시설	X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산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라목 (단, 유치원 대학 제외)
제26호	유흥주점/단란주점	X	○	X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호텔업	X	○	X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한시적 제외
제28호	만화가게	X	○	-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
제29조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X	○	X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법례	× : 절대금지, ○ : 원칙금지, 제한적 설치가능, -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상대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 당구장은 절대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참고자료 8】

## 고발요령 및 절차

□ 담당 공무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업소를 인지하면,

- ① 고발의뢰서
- ② 고발장
- ③ 담당 공무원 진술서
- ④ 입증서류(채증사진, 행정공문서 등)를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을 접수(우편 접수가능)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뢰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후 검찰청에 송치

[예시1]

### 고 발 장

- 1. 피고발인 인적사항
- 2. 영업장소
- 3. 고발사유 및 내용
- 4. 관계법규
- 5. 첨부서류

201 . . . . .

○ ○ 교 육 청 교 육 장

○○경찰서장 귀하

[예시2]

## 진 술 서

◦ 소 속 :

◦ 직 명 :

◦ 성 명 :

- 업 소 명 :

- 업 종 :

- 업 주 명 :

- 영업장소 :

201 . . .

위 진술인

(서명)

○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9】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

구분	점검항목	중점점검 시 기	연 간 점검횟수	비 고
1	환기	동 절 기	1회 이상	
2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동 절 기	1회 이상	
3	실내온도 및 습도	계 절 별	4회 이상	
4	소음	하 절 기	1회 이상	
5	교사내 공기질 등			
5-1	미세먼지(PM10 및 PM2.5)	연 중	1회 이상	
5-2	이산화탄소(CO <sub>2</sub> )	동 절 기	1회 이상	
5-3	폼알데하이드(HCHO)	하 절 기	1회 이상	
5-4	총부유세균	하 절 기	1회 이상	
5-5	낙하세균	하 절 기	1회 이상	보건실·식당
5-6	일산화탄소(CO)	동 절 기	1회 이상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
5-7	이산화질소(NO <sub>2</sub> )	동 절 기	1회 이상	
5-8	라돈(Rn)	-	1회 이상	1층 이하 교실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하 절 기	1회 이상	신축(증·개축)후 3년이 내 교실
5-10	석면	-	1회 이상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5-11	오존(O <sub>3</sub> )	동 절 기	1회 이상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하 절 기	1회 이상	보건실
6	폐기물	하 절 기	2회 이상	
7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하 절 기	2회 이상	
8	먹는 물	계 절 별	4회 이상	
9	상수도 및 하수도	하 절 기	1회 이상	
10	화장실	하 절 기	4회 이상	
11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하 절 기	4회 이상	

## 【참고자료 10】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일상점검 사항

항 목	점 검 내 용	비 고
환 기 의 적 정 성	교실 내의 불쾌한 냄새 유무, 창문 개·폐에 따른 자연환기의 적정성 또는 기계환기 장치의 적정 가동 여부	
밝 기 의 적 정 성	조명기구의 적정수 운영 여부 및 직사광선으로 인한 눈부심 발생 여부	
온·습도의 적 정 성	교실내 냉·난방으로 적정 온·습도의 유지여부	
소 음	교실 외부로부터 수업에 방해가 되는 소음의 존재여부	
공기질의 적 정 성	교실내 학생들이 호흡기 계통의 통증, 두통,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지 여부	
음용시설 등 청결성	음용시설과 구내매점 등이 청결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청 소	교실의 청결상태, 쓰레기통, 청소도구의 관리상태 등	
기 타		

## 2019.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방향

---

발간등록번호 : 전북 2019 - 098

발 행 일 : 2019. 01.

발 행 처 : 전라북도교육청

---